

●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4-37호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(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3-24호, 2013.6.1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2014년 6월 23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시험방법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(이하 “고시”라 한다)에 의하여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시험방법은 고시 제3조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의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(이하 “장해방지 시험”이라 한다)에 적용한다.

제2장 세부시험방법

제3조(일반사항에 대한 세부시험방법) ①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측정기구는 별표 1-1의 KN 16-1-1을 적용한다.

②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전도성장해 측정용 보조장비는 별표

1-2의 KN 16-1-2를 적용한다.

③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기구의 장해전력 측정용 보조장비는 별표 1-3의 KN 16-1-3을 적용한다.

④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방사성장해 측정용 보조장비는 별표 1-4의 KN 16-1-4를 적용한다.

⑤전자파장해 및 내성측정기구의 30 MHz ~ 1000 MHz 주파수 범위의 안테나 교정시험장은 별표 1-5의 KN 16-1-5를 적용한다.

⑥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전도성장해 측정은 별표 1-6의 KN 16-2-1을 적용한다.

⑦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장해전력 측정은 별표 1-7의 KN 16-2-2를 적용한다.

⑧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방사성장해 측정은 별표 1-8의 KN 16-2-3을 적용한다.

⑨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내성측정은 별표 1-9의 KN 16-2-4를 적용한다.

⑩전자파장해 및 내성 측정방법의 대형기기에서 발생한 방해 방출의 현장 측정은 별표 1-10의 KN 16-2-5를 적용한다.

⑪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고조파 전류 방출 측정은 별표 1-11의 KN 61000-3-2/61000-3-12를 적용한다.

⑫공공 저압 배전망에서의 전압변동 및 플리커 측정은 별표 1-12의 KN 61000-3-3/61000-3-11를 적용한다.

제4조 (대상기기별 세부시험방법) ①산업, 과학, 의료용기기(ISM)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2의 KN 11을 적용한다.

②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3의 KN 13을 적용한다.

③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별표 4의 KN

14-1을 적용한다.

- ④조명기기류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9의 KN 15를 적용한다.
- ⑤전자렌지로부터 방사되는 주파수 1GHz 이상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10의 KN 19를 적용한다.
- ⑥정보기기류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5의 KN 22를 적용한다.
- ⑦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등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6의 KN 41을 적용한다.
- ⑧전기철도기기류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7의 KN 50을 적용한다.
- ⑨전력선통신기기류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11의 KN 60을 적용한다.
- ⑩무선설비기기류의 장애방지시험
 - 1. 무선설비기기류의 공통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1의 KN 301 489-1을 적용한다.
 - 2. 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2의 KN 301 489-7을 적용한다.
 - 3.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3의 KN 301 489-17을 적용한다.
 - 4.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에 대한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4의 KN 301 489-24를 적용한다.
 - 5. 디지털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5의 KN 301 489-6을 적용한다.
 - 6. 생활무전기에 대한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6의 KN 301 489-13을 적용한다.
 - 7. 간이무선국에 대한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7의 KN 301 489-5를 적용한다.
 - 8.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대한 장애방지시험은 별표 8-8의 KN 301 489-3을 적용한다.
 - 9.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에 대한 장애방지시험

은 별표 8-9의 KN 301 489-9를 적용한다.

10. 이동전화용, 개인휴대전화용, 이동통신용 기지국, 무선중계기, 보조기기에 대한 장해방지 시험은 별표 8-10의 KN 301 489-26을 적용한다.
 11.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에 대한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1의 KN 301 489-18을 적용한다.
 12. 아마추어무선국용 무선설비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2의 KN 301 489-15를 적용한다.
 13.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에 대한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3의 KN 301 489-2를 적용한다.
 14. 체내이식 무선의료기기에 대한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4의 KN 301 489-27을 적용한다.
 15. 지반 탐사 및 벽면 탐사 레이더에 대한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5의 KN 301 489-32를 적용한다.
 16.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6의 KN 301 489-20을 적용한다.
 17. 해상항해용 무선설비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8-17의 KN 60945를 적용한다.
- ⑪무정전 전원장치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12의 KN 62040-2를 적용한다.
- ⑫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장해방지사험은 별표 13의 KN 60947를 적용한다.

⑬주거,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4의 KN 61000-6-3를 적용한다.

⑭산업 환경에서의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5의 KN 61000-6-4를 적용한다.

⑮멀티미디어기기 전자파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6의 KN 32를 적용한다.

⑯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장해방지 시험방법은 별표 17의 KN 17을 적용한다.

⑰가변속 전력구동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은 별표 18의 KN 61800-3을 적용한다.

부 칙<제2008-3호, 2008.5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설비기기류의 장해방지시험은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시기를 적용한다.

부 칙<제2008-57호, 2008.12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에 의한 별표 1-1과 별표 1-4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공고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에 의한 별표 1-1과 별표 1-4는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<제2009-9호, 2009.12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전자과장해방지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0-5호, 2010.12.24>

제1조(시행일) ①이 공고는 전자과장해방지 기준이 개정 고시되어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②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에 의한 별표 1-1과 별표 1-4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공고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에 의한 별표 1-1과 별표 1-4는 부칙 제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이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<전파연구소고시 제2011-8호, 2011.1.24>

제2조(다른 고시와의 관계시행일) ①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 및 공고에서 「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·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」, 「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고시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<제2011-30호, 2011.12.23>

제1조(시행일) ①이 공고는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7항 관련 별표 6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2-21호, 2012.6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2013-24호, 2013.6.17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-2는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5항 및 별표 16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공고 시행일전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<제2014-37호, 2014.6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공고는 공포 후 3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-4 중 표 7의 진천후 OATS에 대한 동조 다이폴 사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.